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

구분	내용
공급대상	-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 제 41조 (전용면적 85㎡이하 공급세대수의 20% 이내) : 총 116세대
신청자격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.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2. 혼인신고일로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3.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배우자 소득이 있을경우 130% 이하) <b>인자</b> 4. 주택종합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
당첨자 선정 방법	- 소득기준 1. 우선공급 75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%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 이하 2. 일반공급 25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%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) 이하에게 공급 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) -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,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. ① 1순위 :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-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(30%),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(20%), 수도권 거주자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) 50% 공급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수가 많은 자 ※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, 입양한 미성년자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수가 같은 경우 추첨
유의사항	※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※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※ 임신 및 입양의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및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 유형	구분	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우선공급 (기준소득, 7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, 2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 120%이하	5,554,984원 ~6,665,980원	6,226,343원 ~7,471,610원	6,938,355원 ~8,326,025원	7,594,084원 ~9,112,900원	8,249,813원 ~9,899,774원	8,905,542원 ~10,686,649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 130%이하	6,665,981원 ~7,221,478원	7,471,611원 ~8,094,245원	8,326,026원 ~9,019,860원	9,112,901원 ~9,872,308원	9,899,775원 ~10,724,756원	10,686,650원 ~11,577,203원

- 기준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5%(상위소득)[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 ~ 13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함  
 - 상위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[(1인당 평균소득(655,729) \* (N-8)) / N]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 19세 이상)합산 소득입니다.

(단, 세대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대상에서 제외함)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#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자료

해당자격	제출자료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, 재직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]	해당직장 세무서
	신규 취업자	- 금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·재직증명서	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직증명서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불가 자 (건강 보험금, 직장 가입자만 해당)	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 (근로소득지급조서)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/ 사업자등록증	세무서
	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세무서
	신규사업자	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- 사업자등록증	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법인등기부등본	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세무서	
	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	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수급자 증명서	동사무소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	
	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비사업자 확인 각서 (건분주택에 비치)	건분주택	